

한미 통상협안 현황과 전망

본 회 국제부

목 차

I. 한국 자동차시장

1. 수퍼 301조하의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 지정

- ◎ 한미 자동차협상 핵심 쟁점
- ◎ 수퍼 301조란?
- ◎ 종합무역법안 301조란?
- ◎ 미국의 수퍼 301조 발동의 배경
- ◎ 향후 절차
- ◎ 향후 전망

II. 전자관련 한미 통상마찰 현황과 전망

1. CTV WTO 분쟁
2. DRAM WTO 분쟁

I. 한국 자동차시장

1. 수퍼 301조하의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 지정

◎ 한미 자동차협상 핵심쟁점

	미국측 요구	한국측 입장
관세 (현행 8%)	미국 수준(2.5%) 으로 인하	EU의 10% 보다 낮음
세계 세제	자동차관련 누진 세 체계 완화	세계개편은 국회 의 고유 권한이므 로 약속 불가
저당권 제도	할부차량의 채권 회수 등을 위해 저당권 설정 허용 해야	사회문화적 여건 때문에 불가함

◎ 수퍼 301조란

↳ 미국의 대외적자 해소를 위해 종합무역법을

제정하면서 생겨난 항목으로 종전의 통상법 301조와는 달리 통상마찰 대상품뿐 아니라 분쟁국가의 모든 상품에 대해 무차별적인 무역보복조치를 가능케 한다.

부시행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운용되다 90년 폐기됐으나 클린턴의 행정명령으로 94년부터 97년말까지 시한부로 부활되었다.

이 조항은 교역대상국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어 다자간협약인 WTO협정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대상국이 WTO에 제소하려면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슈퍼 301조 발동만으로는 제소가 어렵고(아직 미국의 슈퍼 301조 자체를 WTO에 제소한 국가는 없다) 미국이 보복조치를 취한후에야 가능하다.

◎ 종합무역법안 301조란?

미국이 통상협상에서 불공정 협상대상국이라고 간주하는 국가에 대해 관세부과 등 무역보복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종합무역법상의 조문으로 일반·슈퍼·스페셜 등 세가지로 구분된다. 이 세가지 조문의 내용 및 보복조치 범위는 똑같고 법조문의 근거·절차·발동대상 등이 다를 뿐이다.

일반 301조는 업계의 청원 또는 USTR의 자체발의로 발동할 수 있고 슈퍼 301조는 USTR만이 발동할 수 있다. 스페셜 301조는 적용대상이 지적소유권 분야로 제한된다는 점외에는 슈퍼 301조와 내용이 거의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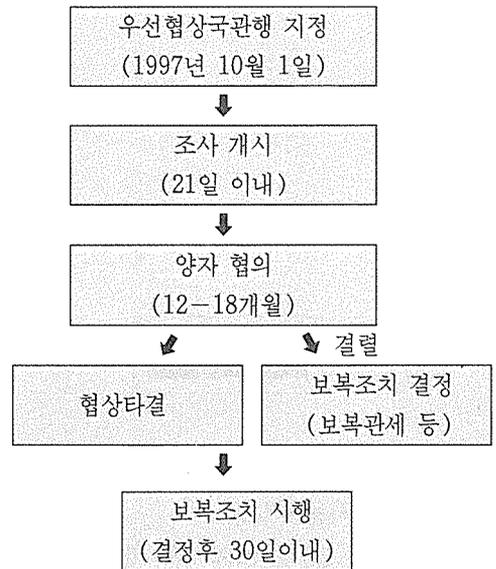
◎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의 배경

미국의 자동차업계와 상하원의원들은 클린턴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슈퍼 301조의 발동을 촉구하는 등 미국내 압력이 강해지면서 미 행정부는 초강수를 선택하여 한미 자동차협상에 최초로 발동하였다. 이번의 우선협상 대상국관행(PFCP) 지정도 한국에 자동차를 더 팔겠다는 것보다 미국의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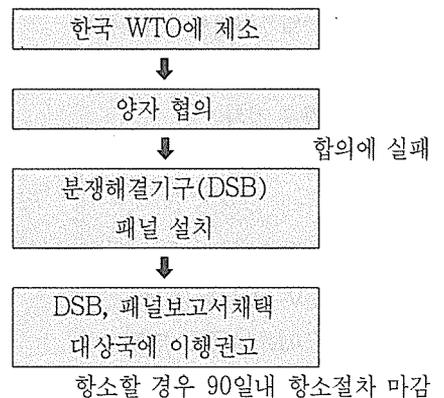
산업의 수출의 잠재적 위협요인이 되고 있는 한국업계의 증설계획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 향후 절차

☞ 슈퍼 301조 발동절차(약 12-18개월 소요)



☞ WTO 제소절차(평균 15개월 소요)



◎ 향후 전망

국내 신문에 보도된바와는 약간 달리, 한국 관련 통상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 일방적인 무역제재조치를 시행하기 보다는 WTO분쟁 해결절차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한다.

USTR내의 많은 법률전문가들은 일방적 제재가 G/ATT/WTO 협정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또한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은 제재가 한국의 경제를 손상시키리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한편, 외국으로부터 자동차 수입에 의존하는 미국 자동차딜러협회(American Int'l Dealers Association) 및 관련단체들은 무역제재에 강한 반대를 표시하고 있다.

II. 전자관련 한미 통상마찰 현황과 전망

1. CTV WTO 분쟁

◎ CTV A/D 현황

○ '83년 5월 대미수출 컬러TV에 대해 반덤핑 조사개시 이후 8차 연례재심까지 진행되었다.

○ 삼성의 경우 제4차, 5차, 8차, 9차 연례재심에서 미소마진(0.5%)을 받아 조사철회(Revocation)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93년부터 '95년 4월까지 9차례 조사철회(Revocation)를 신청하였다.

○ '95년 2월 6,7차 재심 예비판정에서 Revocation 신청 지연 사유로 삼성의 철회 요청을 잠정 기각

○ '96년 2월 6,7차 재심 최종판정시, 신청시한 지연을 이유로 덤핑부재의 의한 조사철회 신청 기각

○ '95년 7월 삼성은 반덤핑 조사종결을 위해 상황변화에 따른 재심 조사를 신청

○ '96년 6월, 한국 정부의 WTO 제소 움직임에 따라 미 상무부는 상황 변화에 근거한 재심개시 발표를 하였으나 그후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

지 않고 있다.

○ '97년 7월 10일, 정부는 미국의 삼성 Color TV A/D Case를 WTO에 공식 제소

○ '97년 8월 8일 한미 1차협의 개최, 별다른 소득없이 종결하였다. 한국은 “한국산 Color TV가 6년간 미국시장에서 사실상 덤핑을 하지 않았고 그 후 6년간은 수출을 중단했는데도 미국이 반덤핑조치를 철회하지 않는것은 WTO협정에 위배된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은 “미국 조사당국의 인력부족으로 재심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반덤핑조치를 철회하기 위한 재심과 A/C조사 절차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으므로 한국이 좀더 인내를 갖고 기다려달라”고 요청하였다.

○ '97년 10월 8일 한미 2차협의 예정

성과가 없을 경우, 한국은 WTO분쟁해결기구에 패널설치를 요청할 예정

◎ 미국의 의도

현재의 아날로그 TV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계속함으로써 향후 부상할 디지털 TV시대에 대비해 한국업체의 미국시장 잠식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우회조사도 결국 반덤핑조치가 철회되면 소멸되므로 반덤핑 건과 연계하여 우회에 대한 실사보고서 및 예비판정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 향후 전망

2차 한미 양자협회가 10월 8일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다. 본회 미주통상변호사의 정보에 의하면, 미국은 1차 협의때의 기존입장을 2차에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WTO 분쟁해결 패널이 설치될 것이다.

◎ 패널이 설치될 경우의 예상일정

○ 패널설치 요청 후 30일 이내에 패널 설치, 설치

후 20일내에 패널 구성 및 위임범위 확정, 이후 6개월내에 당사국에 패널최종보고서 제시

○ 제소국 요청시 패널활동 유예, 유예기간은 12개월내임

○ 항소가 없을 경우 분쟁해결기구는 60일내에 패널보고서 채택

○ 항소할 경우 90일내에 항소절차 마감, 이후 30일내에 분쟁해결기구가 항소보고서 채택

○ “합리적 기간내에(통상 15-18개월)” 패널 및 항소기구 권고안 이행

○ 권고 및 판정을 이행치 않을 경우, 30일내에 보상 및 양허정지 요청 승인

2. DRAM WTO 분쟁

◎ DRAM 반덤핑 규제현황

○ 1992. 4.22 Micron Technology 제소

— 대상품목 : 1Meganit DRAM,
4Megabit DRAM

○ 1992. 5.12 상무부, 조사개시

○ 1992. 6. 3 ITC, 피해긍정 예비판정

○ 1992. 9.30 피소측, 최종판정 연기 신청

○ 1992.10.21 상무부, 덤핑긍정 예비판정

— 삼성전자 : 87.40%

— 금성일렉트론 : 52.41%

— 현대전자 : 5.99%

— 기타 : 61.88%

○ 1992.11. 4-11.25 상무부, 현지실사

○ 1993. 1.15 피소측, 반덤핑조사 중지협정안
(Suspension Agreement)제출

○ 1993. 2.18 상무부, 덤핑긍정 최종판정

— 삼성전자 : 0.74%

— 금성일렉트론 : 4.97%

— 현대전자 : 7.19%

— 기타 : 3.19%

○ 1993. 4.21 상무부, 최종덤핑 마진을 수정발표
(제소측의 이의제기로 덤핑마진 조사시의 감가상각
계산금액상의 오류인정)

— 삼성전자 : 0.82%

— 금성일렉트론 : 4.97%

— 현대전자 : 11.45%

○ 1993. 4.22 ITC, 산업피해 긍정 최종판정

○ 1994. 5 상무부, 제1차 연례재심 개시

○ 1994. 5 상무부, 제2차 연례재심 개시

○ 1994. 5 상무부, 제1차 연례재심 개시

— LG Semicon : 0.01%

— 현대전자 : 0.10%

○ 1997. 7 한국정부 WTO에 제소

○ 1997. 8 LG, 현대 미 국제무역재판소(CIT)
에 제소

◎ 향후전망

한미 1차 양자협약이 10월 9일 제네바에서 예정되어 있다. 보도에 따르면, 협회에 앞서 한국정부는 미국의 DRAM 반덤핑 관세명령 철회거부의 세부설명 및 법적 정당성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미국에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건에 대한 미상무부의 서면결정을 비추어 봤을 때, 1차 협의에서 미국은 자국의 입장을 굽히지 않을 전망이다.